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신규 위임사무 반영과 상위법령의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《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》

○ 권한 위임사무 신설 : 16건

- 국가사무 지방이양 : 재위임사무(규칙) → 위임사무(조례)
 -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에 대한 사무(12건) : 환경정책과
 -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재활용 및 관리대상기기 관리에 관한 사무(4건) : 환경정책과

○ 시장·군수 사무로 이양됨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: 2건

-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무(2건) : 환경정책과

○ 사무이관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 : 4건

- 승강기 관련 사무(4건) : 치수방재과 → 미래산업과

4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국가사무를 도지사의 사무로 이양하는 사무 16건과 도지사의 사무 중 2건이 시장·군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해당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것임.

또한 도지사의 사무 중 4건을 사무의 이관에 따른 위임부서를 기존 치수방재과에서 미래산업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